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이달희 · 김기현
이헌승 · 김성원 · 이인선
김기웅 · 고동진 · 김위상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.

이에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,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14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(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·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을 포함한다)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0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(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심사·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을 포함한다)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